

□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요

- (설치근거)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(약칭 : 지역특구법)」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
- (구성) 중기부 장관(위원장),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44명
- (기능) ①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·변경·지정 해제 사항 심의·의결
 ② 실증 특례의 부여·변경·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
 ③ 특구 내 임시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

□ 제26차 심의위 개요

- (일시/장소) '26.8.5(수) 15:00~16:00/SVC 서울
- (구성) 중기부 차관(위원장 代),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등 30여 명
- (안건)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 3건

▷【안건①】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(심의)

▷【안건②】 既 지정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(심의)

- (후속조치) 실증 종료로 인한 임시허가 전환

- * ①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
- ②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특구
- ③전남광주 개조전기차 특구

- (후속조치) 규제해소로 인한 임시허가 종료

- * 충북 그린수소 특구

▷【안건③】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(보고)